

##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·고시하고 보고합니다.

- 아 래 -

지구명	위치	유형	등급	면적(㎡)	지정 사유	고시번호 (날짜)	비고

붙임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 1부(따로 붙임)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